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원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협상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자 판결 (2006가합16537)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2007년 4월 12일 외교통상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6년 7월 25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호 선박 선원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소말리아 현지 및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원고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례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광범위한 정보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협상에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동원호 선원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도는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해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8월 24일 언론중재위원

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333)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6537 정정보도 등

원 고 : 외교통상부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대표자 장관 송 민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 승 기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국빌딩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 규

변론종결 : 2007. 3. 22.

판결선고 : 2007. 4. 12.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1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내용을 방송하라.

2. 만일 피고가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PD수첩” 프로그램에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보도

1) 피고는 2006. 7. 25. 23:05경부터 24:00경까지 약 55분 동안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피랍 100일 소말리아 동원호,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이 사건 방송은, 김영미 프로듀서가 2006. 7. 초경 소말리아 해적(이하 ‘이 사건 해적’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4. 4. 납치된 동원수산 주식회사(이하 ‘동원수산’이라 한다) 소유의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이하 ‘이 사건 선원들’이라 하고 위 납치사건을 ‘동원호 사건’이라 한다)과 위 해적을 만나기 위하여 소말리아로 직접 찾아가 취재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선원들이 현재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고, 그 가족들도 위 선원들의 안위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선원들은 납치된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적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원고 및 동원수산(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해적 사이의 석방에 관한 직접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협상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고 등은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에 나서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방송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보도내용을 지적하면서 그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먼저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 후, 원고가 지적하는 5가지 보도내용을 구분하여 각 그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6조)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

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해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당해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래의 언론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언론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원고의 제①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①주장

이 사건 해적은 동원호를 납치한 직후부터 언론인들의 현장 접근을 허용하고, 먼저 언론에 접촉하거나 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리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방송에서 소말리아를 취재하였던 김영미 프로듀서조차도 이 사건 협상에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납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인질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적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집단인데도, 정부는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해적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모현 프로듀서가 "지금 정부에서는 해적들이 협상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미 PD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

자, 김영미 프로듀서가 “그건 우리 정부가 동원호를 납치한 해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해적들은 언론을 끌어들이어서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런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6. 4. 26. 납치범들의 성격이라든가 정체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 장면에 이어 2006. 7. 4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납치범들이 동원호 관련 언론 보도를 인터넷을 통해 파악하면서 국내 여론의 움직임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정책홍보팀 관계자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한 후, “그러나 현지에서 본 상황은 달랐습니다. 해적본부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곤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구식 라디오 한 대 뿐, 인터넷은 커녕 노트북도 처음 보는 듯 신기했습니다. 외국채널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과연 해적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한 것일까”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①원보도’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①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①원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의 판단으로는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정도의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보면, 그 주된 취지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원고가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분석 및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평가적 내용에 대한 반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①원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①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제②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②주장

원고는 동원호 납치사건을 접하자마자 이 사건 해적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착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에 임하였기에 이 사건 해적과 소말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고, 소말리아 현지에서 이 사건 해적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던 것은 이 사건 해적이 소말리아가 매우 위험하여 협상인이 납치 또는 살해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해적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상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소말리아 현지에서 이 사건 해적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말리아 현지 및 이 사건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건 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모현 프로듀서가 “그런데 왜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영미 프로듀서가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고 또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보도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아직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라 한다)과 원고 등이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협상이 아직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라 한다)으로 나눌 수 있어 각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나누어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에 대하여 원고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하여 협상중개인을 파견하겠다는 우리 측의 제안을 이 사건 해적이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다는 사실적 주장과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한 의견표명 또는 평가의 부분에 관하여만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아닌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에 대하여 원고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태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협상에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 중 원고 등이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반론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원고의 제③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③주장

원고는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통하여 동원호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원수산과 이 사건 해적 사이에서 직접 협상을 하도록 하여 동원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동원수산의 협상을 지원하였는바, 이슬람법정연대의 복진동향, 이들이 동원호 사건 해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협상에 임하였고, 영국인 협상전문가를 고용하여 동원수산의 협상을 돕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달라는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 외에는 이 사건 선원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라도 그가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참조),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사건 참조).

갑 1호증, 을 1호증의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는 사건 직후 선

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라고 한 뒤, 그러나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고, ‘소말리아 과도정부 측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장관 접촉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과도정부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영사와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가 최근까지 조속한 석방 노력을 촉구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소말리아의 과도정부, 그렇다면 이번 사태 해결에 과도정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 과도정부의 수산부장관은 지난 5월 초 지역 라디오를 통해 한국어선나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소말리아 수산부장관 핫산 압셀 빠라가 현재 과도정부는 해적들을 단속할 여력이 없고 과도정부는 납치된 자들을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과 AFP 동아프리카 담당기자인 알리무시가 “힘없는 과도정부가 발행한 조업허가권 때문에 한국 선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난 7월 1일자 외교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사건 후 석 달이나 흐른 지금에도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③원보도’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방송 전인 2006. 7. 24. 원고에게 동원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도 않으며, 동원호 사건이 해외에서 자국민 납치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능과 허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뷰 요청서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③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항은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

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에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가 이 사건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방송 보도의 경위,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③원보도는 원고가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이 사건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원고의 제④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④주장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은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현지의 열악한 통신사정으로 인하여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해적이 동원호 사건 이전에 납치하였던 다른 선박에 관한 협상도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에 도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이러한 협상방법이 동원호 사건 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원의 석방에 관한 협상이 전화와 팩스로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어 협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소말리아 해적단과 한국 협상단의 협상 과정은 전화와 팩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3백여 명의 하라데레 마을에 단 3대 뿐이라는 유선전화기. 그런데 그나마도 연결 안 되는 때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한번 전화통화를 하려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몇 시간씩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하라데레 마을에서 영어를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협상은 더더지고 있었습니다.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④원보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④원보도와 관련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이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협상 방법은 이 사건 해적의 다른 납치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가 협상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권자도 오로지 사실적 반박만 할 수 있고, 그에 덧붙여 반론권자의 의견이나 논평을 가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④원보도에 관하여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 중 원고가 협상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은 원고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반론 보도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사. 원고의 제⑤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⑤주장

원고는 2006. 4. 7.부터 이 사건 선원들이 석방된 2006. 7. 30.까지 협상장소인 두바이에 동원수산의 협상 대표와 함께 원고의 협상지원대표를 파견하여 동원수산과 협상전략을 긴밀히 협의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다만 어떠한 국가도 돈을 목적으로 자국민을 납치한 납치범과 직접 국가의 이름으로 협상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원칙 때문에 원고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를 동원수산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돈을 요구하는 납치단체와는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원고의 영사과 관계자가 피고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협상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동원수산이다”라는 말을 한 통화내용을 보도하였고, 이 사건 방송의 끝자락에서 “저희에게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도 해적들과 직접 협상을 하진 않는다고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를 동원수산으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일개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⑤원보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 이 사건 방송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이 사건 해적과 협상을 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동원수산이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해적과 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당연히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 주체를 동원수산이라고 칭하면서 협상에 대한 책임도 동원수산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협상의 주체에 관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비평을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보면, 그 주된 취지는 해적에 의한 피랍3사건의 경우 정부가 해적들과 직접 협상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례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건 해적과 직접 협상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원호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해결시점까지 동원수산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동원수산에게 이 사건 협상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⑤원보도는 피고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⑤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인정되는 반론보도의 범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 제③원보도, 제④원보도의 각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 중에서 위 각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주장 중 원고의 사실적 주장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내에서만 반론보도가 인정이 되고, 이를 넘어선 원고의 의견표명 내지 평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방송방법 및 방송내용은 별지 1 반론보도문의 기재와 같이 고쳐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 중 일부는 피고가 원보도인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반론을 충분히 게재하였거나, 이 사건 방송 후 피고가 원고의 반론내용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고, 일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 중 일부는 위 2항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에 관한 것인바, 이하에서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된 별지 1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인 2006. 7. 26.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난 4개월 가까이 최선을 다해 온 노력을 매도하고 정부의 역할과 사건의 본질에 대해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납치 직후인 지난 4월 7일 정달호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두바이로 파견한 이래 협상지원대표들을 교체하면서 협상전략을 협의하는 등 총력을 경주해왔다”라고 하면서 해적과 정부가 직접 협상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원칙이고 협상장소는 송금이 쉽다는 등의 이유로 해적들이 지정한 것이며, 이 사건 방송은 그간의 협상경과나 해적들의 요구사항 등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원호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원고의 반론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목적이 모

두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언론사가 원래의 보도 이후 나중에라도 상당한 정도의 반론을 보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충실히 하였다면 그 후에 별도로 피해자가 원래의 보도에 관하여 다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반론보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2006. 7. 26.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보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피고가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③원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도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는 동원호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동원수산 측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2006. 4. 26.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인 반기문의 발표내용을 보도하였는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위와 같은 피고의 보도로 인하여 충분한 반론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2006. 4. 26.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동원수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는 장면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동원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그 사건이 해결된 시점까지 계속하여 원고가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반론으로 보도하여 달라는 취지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반론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2006. 4. 26. 당시 원고가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일 뿐이어서 이러한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이 충분히 보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언론중재법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언론사가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을 두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었다는 이 사건 제④원보도에 대하여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 몇 주일씩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반론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등 결코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반론도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고도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대내외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민
판사 이창경
판사 김은정

〈별지 1〉 반론보도문

1. 방송방법

중앙상단 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기사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기사 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 줄 간격, 글자 간격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방송내용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6. 7. 25. "PD수첩" 프로그램에서 2006. 4. 4.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석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동원수산 주식회사의 위 해적들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외교통상부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 이외에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공식협상문안을 하나 만들어 팩스로 주고 받는 데에만 몇 주일씩 소요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당시 동원호 선박을 납치한 해적들 및 소말리아 현지 사정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등 결코 납치 해적들 및 소말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고, 소말리아의 과도정부 측에게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별도로 동원수산 주식회사와 함께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공식협상문안을 작성하여 소말리아 해적들과 팩스로 주고 받는 데에는 몇 주일씩 소요된 사실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

판결 2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송사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를 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자 판결 (2006가합12856)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연구소와 연구소 소속 비상임 운영위원들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심판신청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6년 3월 26일 20시 「KBS 스페셜」 프로그램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 제하의 방송에서 “원고 연구소가 대표적인 외국계 투기 자본인 소버린에게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 김□□ 등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 그룹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연구소가 SK 그룹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반대 측 당사자인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면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공적 활동과 사적 이익의 충돌로서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들의 공정성과 도덕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는 그것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이때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인지 차례로 살펴본다”고 전제한 후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원고 장○○, 김○○, 김□□가 영리 목적의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에게 컨설팅 해 주었다’는 부분,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원고들이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았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정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4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143)을 하였으며 조정 결과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6가합12856 정정보도심판신청

원 고 : 1. ○○연구소

대표자 소장 김 △ △

2. 장 ○ ○

3. 김 ○ ○

4.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안

담당변호사 이 상 훈

Ⅲ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혁

변론종결 : 2007. 3. 22.

판결선고 : 2007. 4. 12.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가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이를 낭독하도록 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연구소(이하 ‘원고 연구소’라고 한다)는 2001. 11. 21.경 설립된 민간연구소로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분석 등 연구활동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은 기업별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 장○ ○, 김○○, 김□□는 모두 원고 연구소의 비상임 운영 위원들이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실행위원들로서 그들이 주축이 되어 원고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 피고는 국내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방송보도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2006. 3. 2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라는 제목의 방송보도를 하였다.

(2) 전체적인 구성 내용

이러한 방송보도에서 피고는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중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해외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내 생산설비도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을 “자본의 파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것이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자본 파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바탕에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주주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에 자리 잡은 주주 중심의 경영관행이 존재하고, 특히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성향의 외국인 자본 내지는 외국인 주주들이 이에 편승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주주이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요구함과 아울러 국내 지배주주에 대한 경영권을 공격함으로써 인하여 국내 기업의 소중한 경영자원이 그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투자에 사용되지 못하고 취약한 경영권 방어 등에 낭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결론으로 국내 우량 대기업들이 주주 중심의 경영관행을 탈피하여 대규모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 모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재계와 노동계가 경영권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상호 보장해 주는 대타협을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3) 이 사건 방송보도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면서 주주 자본주의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진 소액주주운동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그 소액주주 운동가들, 특히 원고 장○○, 김○○, 김□□가 중심이 되어 원고 연구소를 설립하였다면서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화면에 보여준 후 원고 연구소가 공익적인 시민단체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는데, 원고 연구소가 대표적인 외국계 투기 자본인 소비린에게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 김□□ 등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 그룹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연구소가 SK 그룹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반대 측 당사자인 위 소비린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공적 활동과 사적 이익의 충돌로서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매우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3 방송보도문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고 한다).

① “원고 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 “원고 연구소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이때, 원고 연구소가 발간한 주식회사 에스케이에 대한 Proxy Information 보고서와 Company Report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다)

② (원고 김○○이 피고의 담당 PD의 질문에 “소비

린에게도 정보를 팔았는데, 그게 어떻다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답변한 회견 모습에 이어서) “이 단체는 소비린에도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③ (이어서 2004. 1. 19.자 “SK그룹 소액주주 운동 참여연대 기자간담회”에서 원고 장○○, 김□□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소비린이 SK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SK 경영진을 비판하는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상기시킨 다음)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비린을 컨설팅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비린의 반대 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다”

④ (이어서 이에 대한 원고 연구소의 소장인 소외 김△△이 반론하는 회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정○○ 과학기술 정책연구원과의 회견에서 위 정○○이 “...원고 연구소가 만약에 소비린에게 정보를 유료로 서비스했고, 그 과정에서 (이때, 원고 장○○을 지칭하는 발언 부분을 삭제 처리함) 소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줬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취득된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린에게 팔고 있고, 이런 것은 위선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 불성립

원고들과 소외 김△△은 이 사건 방송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6. 4. 20.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2006. 4. 26.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7호증, 을 제1 내지 3, 9,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실로 적시된 아래와 같은 부분들은 모두 진실이 아니고, 그러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은 민간 연구소나 교수 내지 시민운동가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정정보도하는 내용의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 연구소는 그 수익사업의 하나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배구조 분석 및 그 평가정보를 CG INFO라는 보고서 형식으로 원고 연구소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소버린도 이러한 서비스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원고 연구소가 다른 유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소버린에게도 위와 같이 규격화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 연구소가 발간한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원고 연구소가 마치 소버린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의뢰를 받아 소버린에게 위와 같은 규격화된 서비스 이외에 다른 차별화된 보고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② 또한, 원고 연구소는 위와 같이 소버린으로부터 구체적인 별도의 자문의뢰를 받아 그 자문에 응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자료화면으로 보도

된 2004. 1. 19.자 “SK그룹 소액주주 운동 참여연대 기자회견담회”에서 원고 장○○, 김□□가 발언한 내용은 그 당시 SK 주식회사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소버린과 SK 측과의 중재에 실패한 참여연대가 위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취지였을 뿐 SK 경영진을 공격하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버린을 컨설팅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 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다”라는 방송보도도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③ 또한, 원고 장○○은 2004년 3월 SK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버린 측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원고 장○○은 소버린 측과 SK 경영진 사이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이들 양쪽을 포함하여 SK의 체권단까지 모두 만났고, 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소버린 측을 만나 SK 경영진과의 원만한 중재를 위해 노력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소버린에게 SK 지배구조 등에 대한 개별적인 자문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줬다”라는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한편 이 부분 방송보도가 제3자인 소외 정○○과의 회견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지만 이 역시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해 직접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다름 아니며, 비록 원고 장○○을 지칭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방송되었으나, 그 동안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의 진행경과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로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부분이 원고 장○○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원고 장○○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원고 연구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한 여러 정보서비스는 해당 기업의 공시자료나 정부 보유 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 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그 분석 내지는 평가 결과와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연구소 또는 그 운영위원인 원고 장○○, 김○○, 김□□ 등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SK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그 반대 측인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공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취득된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소버린에게 팔고 있다”라는 방송보도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이 부분도 제3자인 소외 정○○과의 회견을 보도한 것이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해 직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는 아래와 같이 모두 진실된 사실에 대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논평의 일종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룬다.

① 원고 연구소가 그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는 한정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석자료인 Company Report 등을 제공하는 한편, 유료 회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문의를 받아 그에 답변하는 이메일컨설팅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메일컨설팅이 포함된 정보 서비스를 소버린에게 제공한 것 자체가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고,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고 고객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관련 업계에서 사용하는 관용어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일치된 사전적 정의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제공한 정보 서비스와 이메일 컨설팅에 대한 논평으로서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는 소버린에 대하여 유료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 김○○, 김□□를 비롯한 원고 연구소의 운영위원 내지 소속원들은 대부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를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SK 경영진을 공격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 역시 진실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자료화면으로 보도된 기자간담회(이것도 원고들이 SK에 대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SK 경영진을 공격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명백함)에서 원고들은 SK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불참의사와 중립 선언을 밝히는 한편,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라는 방송보도는 무엇보다 원고 장○○을 지칭하는 부분이 익명처리된 정도를 넘어 아예 삭제되어 방송되었으므로 원고 장○○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대가를 받고 구체적인 자문에 응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컨설팅이라는 용어 대신 단순히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역시 진실된 보도이다.

④ 또한, 원고 연구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참여연대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그 구성원이 중복되고, 참여연대 소속원들이 중심이 되어 원고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원고 연구소가 발간한 여러 보고서 등이 위 참여연대의 시민운동에 활용되는 한편, SK에 대한 비밀정보(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시민운동

을 하는 과정에서 SK에 대한 비밀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소비린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가 없음)가 아니더라도 원고들은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분석, 가공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 등의 형태로 소비린에게 유료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도 진실된 사실에 대한 보도이다.

나. 판단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는 그것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이때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인지 차례로 살펴본다.

① “원고 연구소가 소비린에도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엇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위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단어 내지 어휘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떠한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단어 내지 어휘는 그 자체의 뜻만으로 그 의미나 취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적인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방송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컨설팅이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보유한 자가 다른 사람

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의뢰인에게 그 의뢰받은 사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식으로 “맞춤형”이 덧붙여졌다면 이는 의뢰받은 내용이나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내용이 의뢰인이 처한 개별 상황이나 여건 내지는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안에 더욱 적합하도록 통상의 컨설팅과 비교하여 그 제공되는 지식이나 정보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서 다른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그것과 차별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②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가 사용되기 이전에 피고는 “원고 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원고 연구소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한 후 소비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이 사건 방송보도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전자, 즉 원고 연구소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에게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정도의 서비스와는 달리, 원고 연구소가 특정한 고객, 즉 소비린으로부터 특정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별도의 자문을 받아 다른 일반적인 고객들과 차별하여 특정 고객(소비린)에게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방송보도가 전체적으로 원고 연구소 내지는 그 운영위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SK 경영진의 반대 당사자인 소비린에게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비윤리적인 자문행위를 하였다고 비판하는 취지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피

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 부분에 이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외 정○○의 회견내용, 즉 “원고 연구소가 SK에 대한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팔았다”라는 보도로 이 사건 방송보도를 마무리하였으며, ④ 이에 따라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접하는 일반적인 시청자로서도 이 사건 방송보도를 통하여 원고 연구소 내지 그 운영위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대외적으로는 국내 대표적인 공익적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SK 경영진을 비판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영리단체인 원고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기적인 외국 자본인 소비린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의뢰를 받아 그에게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건 단어 내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것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전·후의 연결상태와 그 맥락,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흐름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 연구소가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 등을 고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일반적인 고객들과는 달리 특정 고객인 소비린으로부터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자문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행위를 하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보이는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 위와 같은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를 전제로 하여, 과연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 연구소가 소비린에게 위와 같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본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 35호증, 을 제4,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연구소의 정관(갑 제17호증)에는 원고 연구소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정책, 실무관행, 정보의 조사, 연구, 평가 및 관련 자료의 발간 및 발표 등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이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출판, 컨설팅 등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 실제로 원고 연구소는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은 Info Service와 함께 그와 별도로 상담(Consulting)업무를 제공하는 사실, ㉣ 그 중 위 Info Service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원고 연구소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Company Report(국내 53개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Issue Report(국내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시의적절한 분석을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개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요 쟁점과 성향도 포함됨), Proxy Information(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방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주총의안 분석보고서), 한국 기업지배구조 핸드북(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체계, 주주의 권리, 의결권행사방법과 그 절차 등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참고서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제공하는바, 이러한 서비스는 다시 위 네 가지를 모두 제공함과 아울러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받아 그로부터 36시간 내에 원고 연구소가 답변을 하는 “이메일 컨설팅”(연간 10시간이 기본)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회비: 연간 1,200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그밖에 매주 1, 2회(연간 60건 이상) 정도 발간되는 Issue Report만을 즉시 이메일로 송부해 주는 서비스 상품(회비: 연간 700만 원)과 위 세 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건당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상품 등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상품이 마련

되어 있는 사실, ㉔ 그런데 앞에서 본 Info Service 상품으로 그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위 세 가지 유형의 보고서들은 모두 유료 회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연구소가 직접 대상이나 주제를 선정하여 발간한 후 이를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송부해 주는 사실, ㉕ 소버린 역시 이러한 원고 연구소의 Info Service에 연간 1,20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유료 회원으로서 이러한 서비스 상품을 통하여 원고 연구소로부터 위 원고가 발간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Company Report, Issue Report, Proxy Information 등을 제공받은 사실, ㉖ 그리고 원고 연구소는 2004년 3월 SK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2004. 2. 25.경 소버린의 한국 대표인 James N. Fitter로부터, 그 무렵 소버린이 SK 사의 이사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해 그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발간한 원고 연구소의 Issue Report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들이 SK의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들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알리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그러나 원고 연구소는 2004. 3. 3. SK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을 분석하여 의결권행사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발간한 Proxy Information에서 소버린 측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3명 중 2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종전 그대로 유지하였다), ㉗ 또한 그 후 원고 연구소는 2005. 3. 4.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직 유지의 의미”라는 제목의 Issue Report를 발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05. 3. 4. 경 소버린의 한국 내 대리인인 소외 김○○으로부터 위 보고서 중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 그 정정을 구하고 2005년 3월 SK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원고 연구소가 소외 최태원이 SK의 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2005. 3. 7.경 위 김○○에게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 관련한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200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최태원이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 ㉘ 한편, 원고 연구소는 이러한 Info Service와 별도로 특정 고객으로부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문 내지는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는 상담(Consulting)업무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 Info Service의 연간 회비와는 달리 투입인원과 시간을 기초로 산정하는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는 사실, ㉙ 이 사건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연구소의 소장인 김△△과의 회견에서 위 김△△ 역시 “원고 연구소가 위 Info Service와는 별도로 컨설팅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뢰인으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한다”, “위 Info Service는 규격화되고 특별히 맞춤형이 아니므로 기업고객들도 허용하지만 컨설팅 부분에서는 기업고객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소버린에게 유료로 Info Service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해 “외국자본이나 국내자본이나 Info Service는 다 열려있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연구소는 자신들이 그 수익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Info Service와 관련하여, 그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소버린에게 그와 같은 서비스 상품에 같은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다른 유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주제나 대상을 선정하여 발간한 기업지배구조, 특히 SK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제공하였고, 소버린이 가입한 위 Info Service에는 위 보고서 제공 이외에도 연간 10시간의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맞춤형 컨설팅”이란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으로부터 일반적인 유료 회원들과는 달리 별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문 내지 용역수행을 의뢰받아 별도의 대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의미인바(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Info Service와 별도로 제공하는 상담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자문업무 내지는 용역을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으로부터 의뢰받아 유료로 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Info Service에 관하여 세 가지 종류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이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상품 분류는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보고서를 모두 제공받느냐, 아니면 그 일부 또는 보고서 1건씩을 별도로 구매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상품분류에서 기인한 차이만으로는 원고 연구소가 고객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 측과 2회에 걸쳐 이메일을 교환한 사실이 있으나 거기에는 소버린이 원고 연구소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을 의뢰하거나 그에 대하여 원고 연구소가 별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 연구소가 그 무렵 발간한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는 취지가 전부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이메일 교환을 두고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Info Service와 함께 제공되는 이메일 컨설팅이라는 서비스가 소버린에게 제공되었으므로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 대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Info Service와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가 소버린에게 제공된 이상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버린이 원고 연구소의 Info

Service 중 기본형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소버린이 원고 연구소에 대하여 연간 10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원고 연구소가 답변하는 이메일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나, 이러한 이메일 컨설팅은 이미 원고 연구소가 발간하여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과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다시 유료 회원들이 원고 연구소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해 원고 연구소가 36시간 이내에 답변을 완료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서비스인 Info Service에 부수한 보조적인 사후 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를 소버린이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문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앞에서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단순한 평가적 요소라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부분 방송보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다소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 대하여 그로부터 구체적인 의뢰를 받아 SK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문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㉞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㉟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버린을 컨설팅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 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다”는 부분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부분 방송보도의 전후 맥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서 사용된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그 이전에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표현임이 분명하므로, 앞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으로부터 별도로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그에 따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방송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이상, “원고 장○○, 김○○, 김□□가 영리단체인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을 컨설팅해 주었다”라는 내용의 이 부분 방송보도 역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부분 방송 보도 중 “원고들이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SK 경영진을 공격하였다”라는 부분도 허위의 사실에 대한 보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장○○, 김○○, 김□□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소속되어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SK 경영진에 대하여 퇴임 내지는 해임 등을 요구하거나 그를 위한 정관계정을 요구하는 등 SK 경영진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부분 방송보도의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원고 장○○, 김□□의 기자회견 당시 이들이 SK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방송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우선 원고 장○○이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피고가 소외 정○○과의 회견을 방송하면서 원고 장○○을 지칭하는 위 정○○의 발언부분을 삭제하지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장○○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주요 위원으로서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고, 특히 SK의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SK 측과 소버린 측과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위 당사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를 대표하여 직접 소버린 측을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언론에서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장○○이 해외에서 소버린을 접촉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등 원고 장○○과 소버린과의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방송보도를 접한 일반적인 시청자가 통상의 주의만 기울이더라도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소버린을 만나 상담을 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가 원고 장○○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추인되므로, 원고 장○○은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피해자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서 “상담”을 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기에서도 위 “상담”이라는 표현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인바, 이 부분 방송보도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방송보도의 마지막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계속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 내지는 원고 장○○, 김○○, 김□□가 공익적인 시민운동을 명분삼아 SK 경영진을 공격하면서도 그 이면에서 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소버린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에게 SK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주었다라는 표현 역시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에 응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기에서 사용된 “상담”은 그 이전에 사용된 “컨설팅”

내지는 “맞춤형 컨설팅”과 구분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서로 의논한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그로부터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장○○은 2004년 3월 SK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립하고 있던 SK 경영진과 소버린의 원만한 중재를 위하여 그 의견이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버린 측을 면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 역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이 부분 방송보도가 비록 제3자인 정○○이 발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나 거기에서 이 부분 회견내용이 갖는 맥락과 의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정○○과의 회견을 보도한 것은 피고가 이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보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취득된 새로운 정보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소버린에게 팔았다”

살피건대, 원고 연구소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장○○, 김○○, 김□□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그러한 소액주주운동을 함과 아울러 영리 단체인 원고 연구소의 운영위원으로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Info Service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위와 같은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비

린에게 유료로 팔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는 피고의 추측에 기초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방송보도 중에서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원고 장○○, 김○○, 김□□가 영리 목적의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에게 컨설팅해 주었다”는 부분, “원고 장○○이 소버린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원고들이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았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정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장○○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에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청구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명하지 않기로 한다).

(3)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보도가 이루어진 시간대 및 해당 프로그램, 그 표현방법과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3.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을 송달받고도 위에서 정한 기간 안에 위와 같은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민
판사 이창경
판사 김은정

〈별지 1〉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3월 26일 〈이해관계, 일차리의 위기〉 제1편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제목으로, 장○○, 김○○, 김□□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연구소가 외국자본인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다시 소버린에게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연구소는 기업별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등의 정보를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소버린에게도 유료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소버린에 대하여 특별히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또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판매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판결 3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9.자 판결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병합)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5월 9일 장○○과 이○○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택상의 3녀인 장○○, 이승만의 양자인 이○○인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방영한 드라마 「서울1945」에서 장택상과 이승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소개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러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명예,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이 여운형 암살 배후에 이승만, 장택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마치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원고 이○○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친일경력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 등에서 미군정으로부터 다소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거자료와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66611 손해배상(기)
2006가합73756(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 1. 장 ○ ○

2. 이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배 호 성

Ⅲ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혁, 임 상 혁

변론종결 : 2007. 4. 11.

판결선고 : 2007. 5. 9.

주 문 :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100,00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쟁 점

장택상의 3녀인 원고 장○○, 이승만의 양자인 원고 이○○는 피고가 제작, 방송한 드라마인 ‘서울 1945’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서 장택상, 이승만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㉞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 장택상이 친일경찰 출신인 극중 가상인물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배후에서 지시한 것처럼 묘사됨으로써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여부(쟁점 ㉞)

㉟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

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망인의 인격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쟁점 ㉔)

㉔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 문석경을 수양딸로 삼는 것으로 묘사된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망인의 인격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쟁점 ㉕)

2. 일반론

가.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는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예술창작활동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작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술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나 예술작품이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할 경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재가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그 예술작품의 창작자를 상대로 그로 인한 침해의 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그 인물이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이 망인의 인격권 침해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 명예감정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동일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예술작품이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예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모순, 충돌하는 두 법익을 비교,衡量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객관적인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사실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일반 대중의 욕구는 증대되어 가는 반면, 소재가 된 망인에 대한 유족의 추모감정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점, 역사적이고 공격적인 인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평가와 비판은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도출하기 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도 더욱 장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예술활동의 자유는 역사적 인물인 망인의 인격권의 보호보다 우선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다.

나. 일반적으로 방송사에서 제작, 방송하는 드라마도 작가와 프로듀서를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의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영상화한 창작물로서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드라마에서도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어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문화예술의 한 기법인 소위 팩션(faction : 사실을 뜻하는 fact와 허구를 뜻하는 fiction의 합성어) 기법이 드라마 등 예술의 각 분야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법이 사용된 드라마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해 그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 즉 ① 드라마의 근본적인 제작 목적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정면으로 재조명하는 것인지 여부, ②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이 중심인물인지 배경인물인지 여부, ③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각 차지하는 비중, ④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드라마에 허구적 요소가 가미된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허구적 요소보다 사실적 요소가 강조된 소위 논픽션(nonfiction) 역사드라마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대로 사실적 요소보다 허구적인 요소가 더 많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강하게 인식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므로 드라마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판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비록 드라마에서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약간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묘사만으로 실존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소재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자료 또는 정확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러한 근거자료 또는 정확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드라마에서 실존인물의 배역이 직접 하는 대사나 행동이 아니라 그 실존인물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다른 인물의 대사를 통하여 그 실존인물에 대한 사실이 묘사될 경우, 이는 그 실존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당시 그와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본 그 실존인물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나아가 드라마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되어 이야기가 전개됨에 있어서 그들을 통해 묘사

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허구로 승화되어 일반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다면, 비록 그들 사이의 이야기가 실제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을 살펴보고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

이 사건 드라마는 일제시대 및 해방전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서 성장하였지만 출신계층과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허구의 가상인물들, 즉 김해경(한은정 분), 최운혁(류수영 분), 이동우(김호진 분), 문석경(소유진 분), 박창주(박상면 분), 문동기(홍요섭 분) 등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그들 간의 사랑과 우정, 이념적 대립과 가족애 등을 그린 드라마이다.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로는 이승만, 장택상, 여운형, 김구, 김일성, 박헌영 등이 있는데, 총 71회분에 이르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 방영분 중 이승만, 장택상은 제29회분에 이르러서야 처음 등장하고, 위 실존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의 횟수도 위 중심인물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며, 이들은 위 중심인물들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배경인물로 등장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7 내지 22호 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이 사건 드라마의 대사나 장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위 인정근거를 원용하되, 그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나. 쟁점 ㉔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여운형 암살사건의 배후에 이승만, 장택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별지1의 기재와 같고, 피고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별지2의 기재와 같다.

(2) 판단

별지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친일경찰출신인 박창주가 해방이후 수도경찰청장이었던 장택상을 찾아가 경찰로 다시 채용되고 조선정판사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승만과 접촉한 이후 그와 가깝게 지내다가, 이승만이 여운형을 비롯한 좌익세력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는 극우단체의 인물을 사주하여 여운형을 암살한 다음, 암살의 배후를 추궁하는 여운형의 측근 최운혁에게 “빨갱이 놈들에게서, 소련 놈들에게서 남조선을 지켜내는 분들이다. 나를 경찰청 보안과장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분들이고, 내게 조직을 만들 자금과 거사 자금을 내주신 분들이다. 네놈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분들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최운혁이 인민일보에 “미군정과 이승만의 분단 정책이 결국 남북통합을 주장하며 좌우합작을 성사하고자 하셨던 몽양 여운형 선생의 죽음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는 것으로 묘사되며, 경찰의 방조 아래 여운형이 암살되었다는 취지의 나레이션도 나온다. 위 장면들만 본다면, 이 사건 드라마의 시청자들이 여운형의 암살을 사주한 박창주의 배후에 이승만 또는 장택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별지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장택상은 여운형 암살사건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박창주에게 여운형의 처리에 관하여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고, 이승만과 한민당을 위해서는 여운형이 죽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박창주를 보고는 상당히 놀란 표정으로 그를 질책하는 모습도 보이며(원

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에서 장택상이 박창주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싫지 않은 기색을 보이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묘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운형 암살사건 이후 그 수습과정에서도 이승만과 장택상은 그의 암살과 전혀 무관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적인 전개과정에다가 다음의 사정, 즉

① 극중 박창주가 여운형의 암살 배후를 묻는 최운혁에게 위와 같은 대답을 한 것은, 평소 독단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박창주가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여운형 암살을 지시하고도 자신과 대립적인 지위에 있었던 최운혁이 지속적인 추궁을 해오자 마치 자신의 배후에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위세를 과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어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② 경찰의 방조 아래 여운형이 암살되었다는 취지의 나레이션도, 여운형 암살사건 발생 직전에 혜화동 사거리 파출소 부근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달려와 여운형이 탄 리무진의 통행을 가로막고 바로 이어 암살범 한지근이 나타나 여운형을 저격한 다음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를 뒤쫓던 경호원 박성복이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최태화에 의해 공범으로 오인되어 체포됨으로써 결국 현장에서 암살범을 체포하지 못하게 되었던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경찰이 여운형의 암살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정(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최운혁이 인민일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실는 것으로 묘사된 부분 또한 당시 여운형을 지지하던 좌익진영이 여운형 암살에 관한 입장과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힘든 점, ④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나 장택상이 직접적으로 여운형의 암살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는 점, ⑤ 이 사건 드라마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마치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 ㉔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 이○○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① 조선공산당원들이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있던 조선정판사 안에서 조선공산당원인 이관술이 “허어, 참. 한민당이나 이승만은 친일 자본가놈들 돈으로 흥청망청한다는데. 우리 당은, 해방일보 찍을 종이 값도 부족하니...”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4회분), ② 조선정판사 사건 이후 이동우가 조선공산당을 비난하자 최운혁이 조선공산당의 처지를 옹호하면서 “한민당이나 이승만 박사 쪽은 친일파들이 갖다 바치는 돈이 넘쳐나겠지. 친일파 돈으로 조직을 키우고, 신문을 찍고, 우익단체를 후원하고! 조선공산당은 어쩌냐? 당을 운영할 자금도 없고, 신문 찍을 종이조차 허덕인다”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5회분), ③ 일제시대 때 친일자본가인 것처럼 묘사된 가상인물 이인평의 비서가 이인평에게 “군정청 관재처에 전주 고무신 공장 불하 이자와 이차 불하 대금을 냈습니다. 돈암장에도 일금 오만원을 최강욱 비서관님에게 전했구요”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9회분)

(나) ① 해방 후 이승만의 귀국에 대해 박헌영을 비

롯한 조선공산당원들이 대화를 나누던 중 이현상이 “이승만이 누군가! 과거의 유물 이씨 조선의 친족이네. 시대의 유물을 데려와 대체 어찌자는 건가, 미군정은?”이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29회분), ② 최운혁이 강의를 하던 당시 경성제대 강의실내에서 한 학생이 “이승만 박사께서 귀국하자마자,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해산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0회분), ③ 최운혁, 이동우, 문동기 등이 만나 당시 민족지도자들인 이승만, 여운형, 박헌영의 회동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던 중 이동우가 “이 박사님은 미군정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0회분), ④ 최운혁, 이동우, 오철형이 김구의 귀국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최운혁이 “(이승만 박사는) 누구보다, 미군정과 가까운 분이다. 이박사님이 하지 사령관에게 간곡히 권했다면, 백범 주석께서, 임정 요인들과 더 일찍 귀국하셨을 수도 있을 게다. 설사 일찍 환국하시는 게 안 됐다 해도, 그렇게 초라하게 귀국하시지 않도록, 환영식은 준비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대사를 하고, 뒤이어 오철형이 “이승만 박사는 음흉한 반동이야!”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1회분)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방 이후 이승만의 주도 아래 조직된 보국기금실행위원회가 1945. 12. 12. 대한경제보국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족된 이후, 대한경제보국회는 1946. 4경 당시 미군정 사령관인 하지의 정치고문이자 이승만의 개인 고문이었던 굿펠로우 대령을 통하여 미군정의 승인을 얻어 조선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이승만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특히 하지는 이승만과의 연락을 담당하던 스택 중위에게 위와 같이 모금된 자금은 이승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을 비롯하여 이승만 등 우익진영의 정치자금조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사실, 그런데, 당시 대한경제보국회의 간부진에는 민규식, 박기효 등 친일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승만은 해방 이후 하지의 끈질긴 요청 끝에 맥아더 사령관의 전용기를 통해 조선으로 귀국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 외에 안철현, 서중석 등 여러 역사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이승만이 해방 이후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미군정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술들이 다수 존재한다(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이처럼 이승만이 친일경력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정으로부터 다소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앞서 본 위 장면들에서 극중 다른 인물들(특히 최운혁, 이현상, 오철형은 이승만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던 인물들이다)의 대사를 통해 위와 같이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근거자료와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쟁점 ㉔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극중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 문석경을 수양딸로 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드라마에서 문석경은 극중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로 태어나 유복하게 유년시절을 보낸 후 아버지의 사망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하였다가 이승만과의 만남과 교류를 계기로 다시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야망과 질투의 화신으로 그려지는 가상인물이고, 이승만은 적어도 문석경에게 있어서만큼은 문석경의 이러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존재로서 배경인물의

기능만 하고 있을 뿐 역사적 인물로서 크게 부각되어 있지는 않다. 이 같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적인 전개과정 및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의 결합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승만과 문석경 사이의 이야기는 상당한 정도로 허구적인 이야기로 승화됨으로써 일반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비록 그러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가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은 문석경으로부터 친일파인 문석경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정 등을 전해 듣고는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지. 자네 아버님이 친일을 한 것은 결코 잘못이 말할 순 없다만, 그래도 함께 보듬고 갔어야 하는 것을... 소련과 공산당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라고 말하는 대사(제35회분) 등을 통해 친일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밝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승만이 문석경의 처지를 가엽게 여겨 그를 수양딸로 삼게 되는 극적인 설정으로 인하여 원고 이○○의 주장처럼 이승만이 주책없고 흥물스럽게 그려지거나 친일파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처럼 묘사됨으로써 이승만의 인격권이나 그 유족의 추모의 정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지 1~2〉 방송내용 생략 - 편집자 주

